

## 1. 개정이유

부산물비료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료 원료투입비율의 허용기준 범위를 설정하고, 비료생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의 도입(안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원료 투입량(비율)별 오차범위를 설정함.

나.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추가함.

다.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현재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 기재란 추가(안 제17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료수입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 수입국 기재란을 추가함.

마. 중복되는 별지서식의 삭제(안 별지 제22~2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이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허용기준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을 “수출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으로 한다.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에 대한 허용기준

#### 가. 대상비료

부산물비료 및 제3종복합비료(제3종복합비료는 유기물 원료에 한함)

#### 나.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 제조원료 투입량(비율) | 허 용 기 준    | 예 시                                                                        |
|--------------|------------|----------------------------------------------------------------------------|
| 20% 이상       | $\pm 20\%$ |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이 20%인 경우: $20\% \times (\pm 20\%) = 24\% \sim 16\%$<br>(허용범위) |
| 5% 이상 20% 미만 | $\pm 30\%$ |                                                                            |
| 5% 미만        | $\pm 0\%$  |                                                                            |

※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최대값·최소값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허용기준을 적용하되, 각 동물의 분뇨 합계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가축분퇴비에서 돈분 40%, 우분 10%를 사용할 경우

▶ 허용범위: 돈분  $40\% \times (\pm 20\%) = 32\% \sim 48\%$ , 우분  $10\% \times (\pm 30\%) = 7\% \sim 13\%$

▶ 단, 축분뇨 합이 50% 이상 되어야 함. (예시: 돈분 37%, 우분 13%)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3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28% 사용할 경우

▶ 허용범위는  $28\% \times (\pm 20\%) = 22.4\% \sim 33.6\%$ 이나, 22.4%~30%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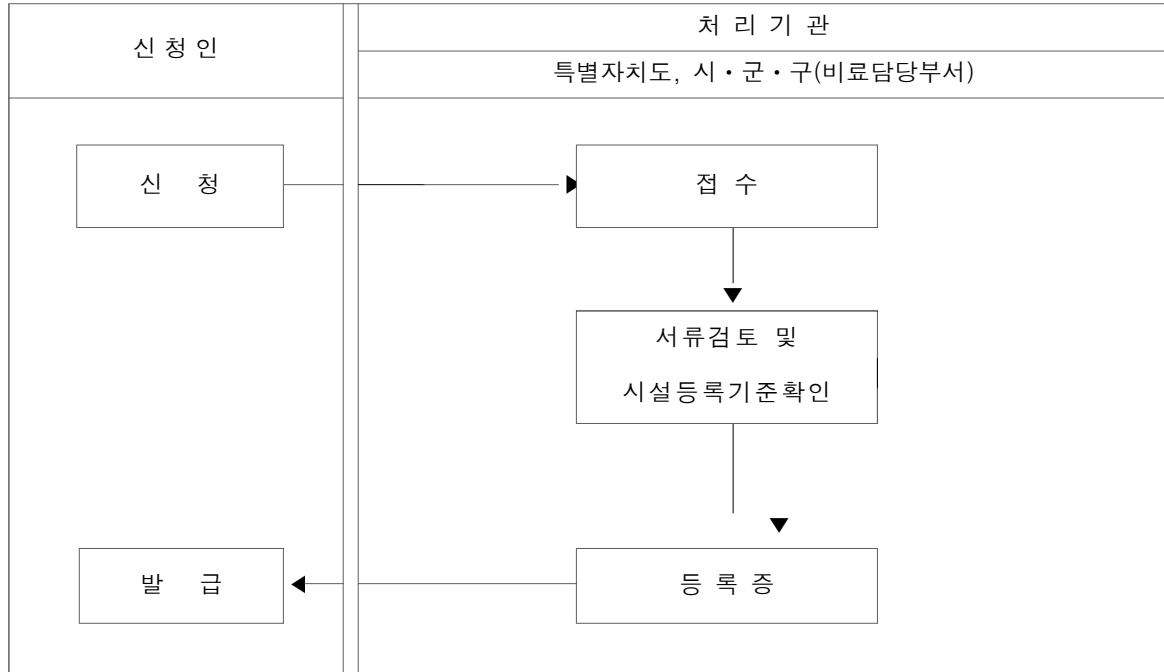
별표 2 제2호가목8)가)(5) 중 “배합비율”을 “투입비율(허용범위)”로 하고, 같은 목 6)가)(5) 중 “배합비율”을 “투입비율”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 원료명과 투입비율은 해당 비료에 투입되는 모든 제조원료에 대하여 적고, 허용범위 내에서 투입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생산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에 대한 허용기준에 따라 허용범위를 기재하십시오.

(예시) 우분 30% 등록 시 투입비율(허용범위): 우분 30%(24~36%)

| 원 료 명 | 성분별 함유율(%) | 투입비율(허용범위)(%) | 비 고 |
|-------|------------|---------------|-----|
|       |            |               |     |
| 계     |            |               |     |

별지 제9호서식 제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명칭의 추가신고사항

| 연월일 | 비료의 종류<br>및 명칭 | 보 증<br>성분량 | 유 해<br>성분량 | 그 밖의<br>규 격 | 원료 투입비율<br>(허용범위) | 생산능력<br><br>톤/일 | 기록자(인)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명칭의 추가신고사항

| 연월일 | 비료의 종류<br>및 명칭 | 보 증<br>성분량 | 유 해<br>성분량 | 그 밖의<br>규 격 | 원료 투입비율<br>(허용범위) | 생산능력<br><br>톤/일 | 기록자(인)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 시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등록번호    | 폐업일  |     |
|      | 사 유     |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 수수료<br>없 음 |
|      |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br>[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            |

### 참고사항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수입업 신고서

( 앞 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영업장의 소재지     |       |       |         |     |
|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출국 |
|              |       |       |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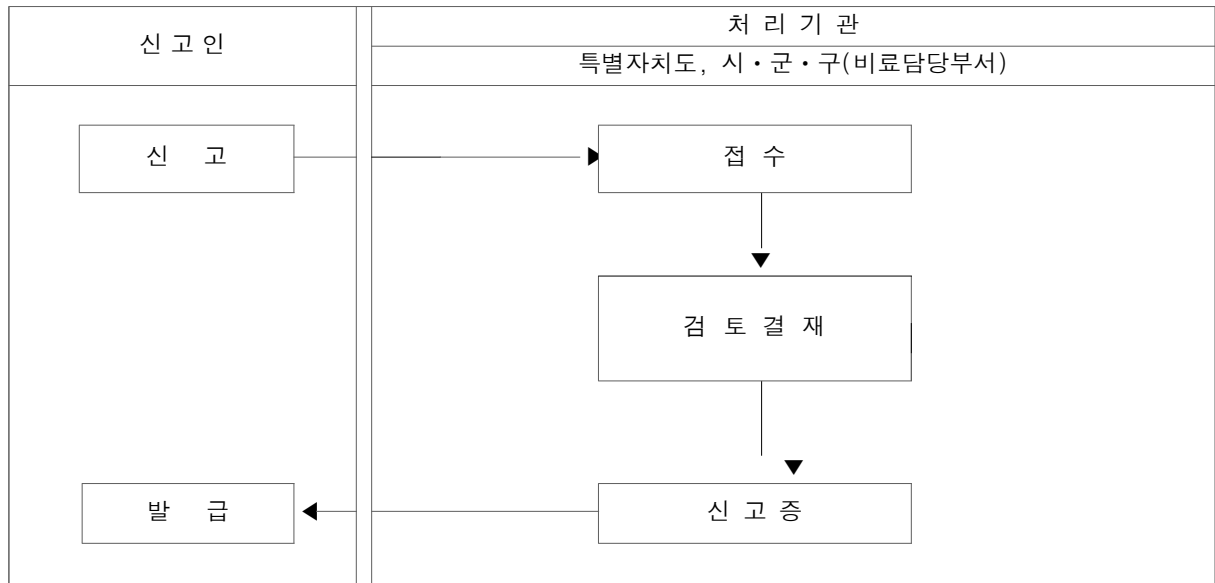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br>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br>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시·군·구의<br>조례가 정하는<br>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첨 양식(비료수입업 신고서의 구비서류 제1호 관련)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수입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 원료명과 투입비율은 해당 비료에 투입되는 모든 제조원료에 대하여 적으십시오.

| 원 료 명 | 성분별 함유율(%) | 투입비율(%) | 비 고 |
|-------|------------|---------|-----|
|       |            |         |     |
| 계     |            |         |     |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 시 |
|------|---------|------|-----|
| 신고번호 | 제 호     |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 사 유  |         |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비료수입업 신고증                                                                    | 수수료<br>없 음 |
|      |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br><b>[비료수입업 신고증 분실사유]</b> |            |

### 참고사항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생산업자보증표

(앞쪽)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생산업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보증표 작성방법

1. **비료생산업자보증표**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보증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붙임딱지),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하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생산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의 생산업 등록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또한 제6호, 제7호 및 제9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
4. 제3호의 “실중량 또는 실용량”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 계량 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에서 정한 비료에 대해서 적되 제조원료 투입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투입비율(허용범위) 대신 원료명만 투입량 순으로 적을 수 있다.
6. 제6호의 “생산연월일” 란에는 해당 비료를 생산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제7호의 “유통기간”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8. 제9호의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료수입업자보증표

(앞쪽)

1. 신고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수입연월일:
7. 유통기간 :
8.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자):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수입업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보증표 작성방법

1. **비료수입업자보증표**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적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입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의 수입업신고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또한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 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
4. 제3호의 “실중량 또는 실용량”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 계량 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에서 정한 비료에 대해서 적어야 한다.**
6. 제6호의 “수입연월일” 란에는 해당 비료를 통관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제7호의 “유통기간”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8. 제8호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자)” 란에는 해당비료의 원 생산국가 및 원 생산업체(자)를 적어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9. 제9호의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보관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보고

「비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 등 록<br>(신고)<br>업 종 | 비료의<br>종류 및<br>명칭 | 수출국<br>(수입비료<br>의 경우) | 생산량(수입량) |     |     |          | 판 매 량 |     |          | 재고량<br>(A-B) |
|--------------------|-------------------|-----------------------|----------|-----|-----|----------|-------|-----|----------|--------------|
|                    |                   |                       | 전년이월     | 상반기 | 하반기 | 계<br>(A) | 상반기   | 하반기 | 계<br>(B)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 신 업 체 명 의

직인

시행

우 주소

전화( )

전송( )

/ 홈페이지 주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자는 제7조제2항,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붙인 비료생산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br>① (생 략)<br>② 제1항제4호의 보증성분, 유<br>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br>은 별표 1과 같다.<br>③ · ④ (생 략) |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제1항제3호의 제조원료 투입<br>비율에 대한 허용기준과 제1항<br>제4호-----.<br>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br>① (생 략)<br>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br>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br>식과 같다.<br>③ (생 략)        |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br>① ~ ③ (현행과 같음)<br><br>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br>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br>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br>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br>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br>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br>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br>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br>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br>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br>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 · |
| <신 설>                                                                                                |                                                                                                                                                                                                                                                                           |

<신 설>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고 등) ①·② (생략)

제17조(보고 등) ①·② (현행과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  
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  
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  
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  
고량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20>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2. (생 략)  
<신 설>

같음)

③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수출국·수입량·판매량  
· 재고량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20>

보증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  
격 및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의  
허용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에 대한  
허용기준  
가. 대상비료  
부산물비료 및 제3종복합비료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물 원료에 한

함)

나.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제조원료 투입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 제조원료<br>투입량<br>(비율) | 허 용<br>기 준 | 예 시                                                                              |
|---------------------|------------|----------------------------------------------------------------------------------|
| 20% 이<br>상          | ±20%       | 제조원료 투입<br>량(비율)이 20%<br>인 경우: $20\% \times (\pm 20\%)$<br>= 24% ~ 16%<br>(허용범위) |
| 5% 이상<br>20% 미<br>만 | ±30%       |                                                                                  |
| 5% 미만               | ±0%        |                                                                                  |

※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

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  
의 최대값·최소값을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 동물의 분뇨를 50% 이  
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  
우:

허용기준을 적용하되, 각  
동물의 분뇨 합계량이 5  
0%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가축분퇴비에서 돈  
분 40%, 우분 10%을 사  
용할 경우

▶ 허용범위: 돈분  $40\% \times (\pm 20\%) = 32\% \sim 48\%$ , 우분  $10\% \times (\pm 30\%) = 7\% \sim 13\%$

▶ 단, 축분노 합이 50% 이상  
되어야 함. (예시: 돈분 3  
7%, 우분 13%)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  
말을 30% 이하로 사용  
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음식물류폐기물 건  
조분말을 28% 사용할  
경우

▶ 허용범위는  $28\% \times (\pm 20\%) = 22.4\% \sim 33.6\%$ 이  
나,  $22.4\% \sim 30\%$ 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